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을 함축성있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“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”를 “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제명 변경하고,
- 별표 1 의정활동비, 별표 2 월정수당은 고성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연 25,315,000원 범위내이므로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6.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